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893호 2012. 5. 14.(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550호 폐기공인 공고 ----- 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5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561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5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5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 17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550호

폐기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 5. 1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폐 기 사 유 : 인증기 미사용
2. 폐기 연월일 : 2012. 5. 4
3. 폐기공인명 및 인영 : “붙임참조”

폐 기 공 인 인 영

공 인 명	규 격 (cm ²)	공인인영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1동민원전용 (인증기)	2.4 × 2.4		인증기 미사용
가정1동장인 /민원전용 (인증기)	2.1 × 2.1		"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1동민원전용3 (인증기)	2.4 × 2.4		"
가정1동장인 /민원전용3 (인증기)	2.1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5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08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연대 발전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사례관리팀을 신설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지역연대의 목적과 기본원칙(제5조 ~ 제6조)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제7조 ~ 제12조)
- 소위원회, 사례관리팀 구성·운영(제13조 ~ 제16조)
- 위기관리 및 예방지원(제18조 ~ 제19조)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제21조 ~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1) 또는 Fax(560-574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여성 보호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6. 제3조 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구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

고,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운영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아동·여성 보호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유형별 또는 특정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사례관리팀 관련업무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

- 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④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제14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

제15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

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사례관리팀 팀원) ①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내지 전문가를 사례관리팀원으로 한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7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8조(위기관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구조
2.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19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20조(연구 및 조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
2. 지역 내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4장 회의운영

제21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6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 ② 사례관리팀 회의는 사례관리팀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 ③ 사례관리팀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내 기관·단체에 통보한다.
-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통보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구청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561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2.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으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가 시로 이관되고, 일부 관련 업무가 구로 위임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심의위원회 및 위임 업무를 정비하고, 축제위원회를 축제별로 설치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미술장식품에 대한 업무이관 및 위임사항	구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위원회를 시에서 설치운영함에 따라 구의 심의위원회 관련조항 삭제	제2장삭제
	미술장식품 설치절차(시행규칙에 따름)	시에서 구로 위임된 미술작품 설치통보, 안내, 설치계획서접수·설치확인, 사후관리 관련 조항 신설	제13조, 제14조에 일부조항 신설
명칭 변경	미술장식품	미술작품	제4장

축제위원회 설치	축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녹청자축제위원회. 정서진축제 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제18조,제2항 <신설>
표기정리	동법 시행령 ⇒ 구청장 ⇒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제1조,제12조 제13조
별첨서식	미술장식품설치 계획심의신청서	삭제 (시 조례에 따르도록 함)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5.29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 032-560-4341, 팩스 : 032-560-2748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 고시·공고)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구청장이”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로 하고, “법 제5조 제2항”을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으로 하며,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 조례 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인천광역시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미술작품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축제위원회는 녹청자 축제위원회, 정서진 축제위원회로 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5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연희노인문화센터의 개관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신설 및 기존 노인문화센터의 명칭 변경이 필요함.

2. 주요 개정내용

- 신설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3(심곡동 325-1)
-------------------	-----------------------------

- 변경

“인천광역시서구노인문화센터” 를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노인문화센터” 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관” 을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으로 변경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87 (가좌동 2-3)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 (석남동 484)

3. 주요 개정내용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4) 또는 Fax(560-274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관”을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서구노인문화센터”를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노인문화센터”로 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3(심곡동 325-1)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5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서구 2013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회 위원을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12. 5.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명칭: 서구 주민참여 지역위원회 위원
2. 모집기간 : **2012. 5. 14 ~ 2012. 5. 18 (5일간)**
3. 모집인원

동명		검암서동	청라	가정 1동	가정 2동	가정 3동	신현창동	석남 3동	가좌 1동	가좌 2동	가좌 4동	검단 1동	검단 2동	검단 3동	검단 4동
인 원	동 단체 추천	-	8	-	-	8	2	6	4	-	7	2	1	8	8
	일반 주민	7	6	7	7	5	-	3	5	2	4	5	6	6	4

- 해당동 거주자로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를 원하는 사람
- 동 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관내 영업소, 사업체 근무자 가능)

4. 주요기능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5.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관 : 해당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선정방법 : 모집인원보다 많이 접수되었을 경우 공개추첨에 의해 선정
- 신청서식

-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게재 및 주민센터 비치

6. 기타 사항은 서구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공고사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참고하시고, 동 주민센터 및 서구청 기획홍보실 예산팀(032-560-40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공모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E - mail			
직업	※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근무기간(예산, 회계 유경험자 포함)	
전화번호	자택(직장) :	휴대전화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문화환경 ④ 도시관리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주요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서구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서

□ 추천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E - mail			
추천대상 (해당 란 기재)	일반 주민	직업 :	
	자생단체 회원	단체명 : , 직업 :	
	주민자치 위원	직업 :	
전화번호	자택 :	직장 :	
	휴대전화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문화환경 ④ 도시관리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주요경력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붙임 8 분과별 담당부서 참조)

상기자를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단체장(직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